●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30호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차세대 전환·운영('24.2.13)에 따라 기존 전국 229개 시군구별로 분산관리되었던 시스템 기능을 통합관리하게 되면서 개선된 기능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에 구축된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해당 주 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방문만 가능하였던 확정일자 열람을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게 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도입('21.6.1.시행)에 따른 확정일자부 확인(안 제6조)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등의 확정일자 의제처리의 경우에 담당 공무원원이 전・ 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확정일자부가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확정일자 부여 누락 등 취약점 개선 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차세대 전환('24.2.13)으로 개선된 기능을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관할 지자체 외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안 제7조)

다.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

본 훈령 인용법률 변경(안 제2조),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안 제4조), 재검토기한 개정(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임대차기획팀)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25 044-201-4179, 4177, fax 044-201-5529)